

제 정 : 2015. 05. 06.

1 차개정 : 2016. 03. 24.

2 차개정 : 2022. 05. 04.

3 차개정 : 2023. 06. 26.



理事會 運營規程

2023. 6. 26.

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이사회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 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, 결정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- ③ 이사회는 각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전항의 경우 이사회는 그 사안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2장 구 성

제4조 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,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를 포함한다.

제5조 (의장)

-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- ②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수행하며,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인 사장, 부사장의 순으로 하며, 대표이사가 의장의

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사장, 전무, 상무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 (이사 아닌 자의 출석)

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가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.

제3장 회 의

제7조 (종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의장이 개최 일을 정하여 소집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8조 (소집권자)

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 2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의장직무 대행의 순위에 따른다.

제9조 (소집 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시를 정하고 7일 전에 이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(2023.6.26 개정)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10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화 및 화상회의, 기타 유사한 통신 장비를 사용하여 이사회를 진행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

행사하지 못한다.

-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 (질서유지)

-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,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의 발언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4장 부의사항

제12조 (부의사항)

이사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.

-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- 1. 주주총회의 소집결정
 - 2.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
 - 3.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 - 4. 회사의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, 변경 또는 해약
 - 5. 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6.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- 7. 이사의 보수
 - 8.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
 - 9.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
 - 10. 정관의 변경
 - 11. 자본의 감소
 - 12.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

13. 주식배당 결정

14. 회사의 해산, 계속, 합병

15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

16.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② 경영에 관한 사항

1. 삭제(2016.3.24 개정)

2. 이사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주요 경영사항(2016.3.24 개정)

③ 재무에 관한 사항

1. 자기주식의 취득, 처분

2.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

– 신주발행의 결정

–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
3. 준비금의 자본 전입

4. 사채의 발행

5. 자기자본 5% 이상에 상당하는 타법인 출자, 출자지분 처분

6. 주권 등의 액면분할, 병합

7. 자기자본 5% 이상의 담보제공, 채무보증, 채무인수, 채무면제

– 회사의 수주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Bond 제외

8. 자기자본 10%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차입계약 체결

9. 해외증권시장 주권 상장

10. 신주의 제3자 배정 승인

11. 중간배당의 실시

12. 투자,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합계가 자기자본 5% 이상인 타법인출자 및
해외직접투자 (투자는 Risk를 총량개념으로 관리)

13. 기타 이사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주요 재무사항

④ 이사에 관한 사항

1. 대표이사의 선정 및 공동대표의 결정

2. 이사의 경업,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의 겸임 및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,
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및 자산의 이용 승인

⑤ 기타

1. 이사회 운영규정, 감사위원회 운영규정, 경영위원회 운영규정의 개폐(2023.6.26 개정)
2.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
4. 준법통제기준의 개폐 및 준법지원인 임면
5.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장 위 임

제13조 (위임)

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13조2 (위원회)

-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 1. 경영위원회(2022.5.4 개정)
 2. 감사위원회
 3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
 4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
- ② 각 위원회의 권한,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-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6조, 제9조, 제10조, 제15조,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4조 (감사위원회)

- ① 이사회의 결의로 본규정 제13조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감사위원회의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14조2 (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결의로 본규정 제13조2에 따른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6장 기타사항

제15조 (의사록)

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, 의사록에는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.

제16조 (간사)

- ① 이사회에는 간사를 두고 재경팀장이 이에 임한다.
- ②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, 이사회 사무전반을 관리한다.

제17조(전문가의 조력)

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에 대표이사에게 임직원이나 외부감사인, 법률고문 등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때 소요된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.(2022.5.4 신설)

제18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(2022.5.4 조항변경)

부칙 (2015.5.6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5월 6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
부칙 (2016.3.24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2.5.4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3.6.26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